래미안 종암2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來美安 래미안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개발과 323호(2006. 12. 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8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1층 ~ 24층 16개동 총1,161세대 중 305세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3자녀 특별공급 : 84.03㎡ - 3세대, 84.88㎡ - 2세대, 84.01㎡ - 2세대, 143.79㎡ - 2세대 총 9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수(향)	분양가격			총분양금액	계약금(계약시)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
	무주택	일반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포함)	계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전용	주거공용	소계											(2007.07.10)	(2007.12.11)	(2008.04.10)	(2008.09.10)	(2009.01.09)	(2009.06.11)	(2009.1[illegible])
민영주택	21099-01	21100-01	2007000015(01)	84.03	59.97	24.06	84.03	35.33	119.36	33.29	2	23(동향)	90,920	146,780	237,700	237,700	47,540	23,770	23,770	23,770	23,770	23,770	23,770	47,540
											4		96,352	155,548	251,900	251,900	50,380	25,190	25,190	25,190	25,190	25,190	25,190	50,380
											4		99,641	160,859	260,500	260,500	52,100	26,050	26,050	26,050	26,050	26,050	26,050	52,100
											12		100,674	162,526	263,200	263,200	52,640	26,320	26,320	26,320	26,320	26,320	26,320	52,640
											15		102,701	165,799	268,500	268,500	53,700	26,850	26,850	26,850	26,850	26,850	26,850	53,700
											1		103,658	167,342	271,000	271,000	54,200	27,100	27,100	27,100	27,100	27,100	27,100	54,200
											6	17(남향)	93,712	151,288	245,000	245,000	49,000	24,500	24,500	24,500	24,500	24,500	24,500	49,000
											6		99,335	160,365	259,700	259,700	51,940	25,970	25,970	25,970	25,970	25,970	25,970	51,940
											6		102,701	165,799	268,500	268,500	53,700	26,850	26,850	26,850	26,850	26,850	26,850	53,700
											18		103,772	167,528	271,300	271,300	54,26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27,130	54,260
											20		105,914	170,986	276,900	276,900	55,380	27,690	27,690	27,690	27,690	27,690	27,690	55,380
											3		106,870	172,530	279,400	279,400	55,880	27,940	27,940	27,940	27,940	27,940	27,940	55,880
	21099-02	21100-02	2007000015(02)	84.20	59.92	24.28	84.20	35.30	119.50	33.36	2	15	88,664	143,136	231,800	231,800	46,360	23,180	23,180	23,180	23,180	23,180	23,180	46,360
											2		93,980	151,720	245,700	245,700	49,14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49,140
											2		97,155	156,845	254,000	254,000	50,800	25,400	25,400	25,400	25,400	25,400	25,400	50,800
											6		98,188	158,512	256,700	256,700	51,340	25,670	25,670	25,670	25,670	25,670	25,670	51,340
											6		100,177	161,723	261,900	261,900	52,380	26,190	26,190	26,190	26,190	26,190	26,190	52,380
	21099-03	21100-03	2007000015(03)	84.88	59.92	24.96	84.88	35.30	120.18	33.63	4	21	93,254	150,546	243,800	243,800	48,760	24,380	24,380	24,380	24,380	24,380	24,380	48,760
											4		96,428	155,672	252,100	252,100	50,420	25,210	25,210	25,210	25,210	25,210	25,210	50,420
											12		97,461	157,339	254,800	254,800	50,960	25,480	25,480	25,480	25,480	25,480	25,480	50,960
											20		99,450	160,550	260,000	260,000	52,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52,000
											6		100,330	161,970	262,300	262,300	52,460	26,230	26,230	26,230	26,230	26,230	26,230	52,460
	21099-04	21100-04	2007000015(04)	84.01	59.97	24.04	84.01	35.33	119.34	33.29	4	21	93,751	151,349	245,100	245,100	49,020	24,510	24,510	24,510	24,510	24,510	24,510	49,020
											4		96,964	156,536	253,500	253,500	50,700	25,350	25,350	25,350	25,350	25,350	25,350	50,700
											12		97,958	158,142	256,100	256,100	51,220	25,610	25,610	25,610	25,610	25,610	25,610	51,220
											20		99,947	161,353	261,300	261,300	52,260	26,130	26,130	26,130	26,130	26,130	26,130	52,260
											10		100,865	162,835	263,700	263,700	52,740	26,370	26,370	26,370	26,370	26,370	26,370	52,740
	21099-05	21100-05	2007000015(05)	110.74	84.92	25.82	110.74	50.03	160.77	43.88	2	22(동향)	138,733	223,967	362,700	362,700	72,540	36,270	36,270	36,270	36,270	36,270	36,270	72,540
											3	18(남향)	143,017	230,883	373,900	373,900	74,780	37,390	37,390	37,390	37,390	37,390	37,390	74,780
	21099-06	21100-06	2007000015(06)	111.11	84.99	26.12	111.11	50.07	161.18	44.03	5	24	135,214	218,286	353,500	353,500	70,70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70,700
	21099-07	21100-07	2007000015(07)	109.95	84.98	24.97	109.95	50.06	160.01	43.57	3	24	135,214	218,286	353,500	353,500	70,70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70,700
		21100-08	2007000015(08)	143.79	114.99	28.80	143.79	67.75	211.54	56.99	8	24	196,758	317,642	514,400	514,400	102,880	51,440	51,440	51,440	51,440	51,440	51,440	102,880
											8		208,539	336,661	545,200	545,200	109,040	54,520	54,520	54,520	54,520	54,520	54,520	109,040
											8		215,692	348,208	563,900	563,900	112,780	56,390	56,390	56,390	56,390	56,390	56,390	112,780
											24		217,872	351,728	569,600	569,600	113,920	56,960	56,960	56,960	56,960	56,960	56,960	113,920
											31		222,309	358,891	581,200	581,200	116,240	58,120	58,120	58,120	58,120	58,120	58,120	116,240
											2		224,336	362,164	586,500	586,500	117,300	58,650	58,650	58,650	58,650	58,650	58,650	117,300

■ 발코니확장공사비

(단위 : ㎡, 천원)

주택형(㎡)	㎡단가	확장면적(㎡)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확장부위	비고
84.03	696	9.20	6,400	거실, 침실2	※ 각 주택형별 일부만 확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체 확장공사 조건으로만 계약을 체결함. ※ 입주자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추가 계약을 하여야 하며 상세내역은 모델하우스 참조.
84.20	698	9.17	6,400	거실, 침실2	
84.88	622	13.68	8,500	거실, 침실1, 침실2	
84.01	681	9.70	6,600	거실, 침실2	
110.74	704	13.07	9,200	거실, 침실2, 침실3	
111.11	636	16.22	10,300	거실, 침실1, 침실2	
109.95	654	14.54	9,500	거실, 침실2, 침실3	
143.79	754	22.56	17,000	거실,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 발코니확장공사비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공사는 필수사항이 아님.(입주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계약사항임)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고층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본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상기 아파트는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① 3자녀특별공급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7. 1. 15.(10:00 ~ 14:00), 당사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7. 01. 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①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③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⑤ 호적등본 1통 (자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자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⑥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⑦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⑧ 신분증 ⑨ 인감도장 ⑩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 거주지역별 3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84.03㎡	84.88㎡	84.01㎡	143.79㎡	계
서울시 거주자	2	1	1	1	5
경기도 거주자	1	1	1	1	4
계	3	2	2	2	9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 01. 10)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 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신청 시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3)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약관련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	85㎡ 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함 - 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85㎡ 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7. 1. 16.	- 접수장소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ARS / 모바일 청약 : 아래의 청약신청 안내 참조 - 접수시간 : 08 : 30 ~ 18 : 00	- 일시 : 2007. 1. 24 - 장소 : 당사견본주택 및 래미안 홈페이지 - 2007. 1. 24 서울경제에 게재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2002. 9. 5일 이후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 포함)				
	2순위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		2007. 1. 17.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3순위	전 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007. 1. 18.	- 접수장소 : • 국민은행 인터넷 / ARS / 모바일 - 접수시간 : • 평일 : 08:30~18:00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 접수시간 : 09:30 ~ 16:30)

■ 인터넷 · ARS ·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신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ARS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 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MBank 전용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ARS	• 전화 : 1588-9999(서비스번호 : 702)	• 전화 : 1369(서비스코드 : 5#)
	KB 모바일 청약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 경과기간 및 요건

- 85㎡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청약부금가입자도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
- 평형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야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평형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신청가능
- 94. 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85m2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치 않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주택형별로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신청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 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없이 인터넷(창구 신청자: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입력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에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차감한 전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
3.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창구청약자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배우자 포함)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제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 시에 한함) • 배우자가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호적등본 등)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제 3 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신청금 납부방법(창구 신청자)
금액	200만원	400만원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낙첨자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7. 1. 25)이후 평일 : 09:30 ~ 16:30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 및 영수증(당첨자는 원본지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3순위 청약 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3자녀 특별공급	- 2007. 1. 15일 16:00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호수를 결정함.
무주택 우선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 제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공통	- 국민은행 전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 신청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결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직계존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 2007. 1. 29 - 2007. 1. 31 (3일간 09:30 ~16:30)
  -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 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납부 : 은행명 - 국민은행(계좌번호: 048401-04-048186) 예금주 - 삼성물산(주)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망)
- 융자알선 : 계약금 20% 납입 후 전체분양대금의 40% 범위내에서 융자알선
  (단, 개인별 총 부채상환비율(DTI), 개인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등)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약정된 분양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장소 : 당사견본주택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ARS,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호적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무주택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 이상 세대주 기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서실 증명서 1통) -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가옥 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비속포함)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 발부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에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때
  -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2002. 9. 5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가구·주방공사, 유리공사, 돌·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유의사항

1. 부대복리시설 :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등
2. 청약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4.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가 사망으로 결혼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5.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6.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7.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인장날인 없이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9.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10.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11.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2.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13.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4.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5.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고 평형은 ( )에 명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6.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17.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19.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20.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21.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2.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23.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시 별도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24. 확장형은 평면 및 Type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25.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26. 배치상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27.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8.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9. 101동 후면(북측) 지하에는 정화조 및 진입계단이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구는 103동 3호라인 측면부분에 설치됨, 104동 전면 지하에도 정화조 및 진입계단이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구는 104동 코어계단실 외부에 설치됨, 이에 주변 세대에는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30. 105동, 107동 지하1층에는 헬스장, 어린이 실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연회장 등이 설치되고, 111동 지하1층에는 경로당, 도서관/문고, 독서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음.
31.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사생활권 등의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32.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10동, 112동, 113동 배면 및 112동 일부세대는 전면에는 2m~9m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석축이 있어 개방감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위치, 높이, 마감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3. 101동, 105동, 107동, 110동, 112동은 단지 레벨차로 인하여 주동 주출입구가 지하층레벨에서 진입하게 됨.
34. 단지의 배치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35. 입면 차별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입면, APT측벽문양 등의 디자인의 형태 및 색체 등이변경될 수 있음.
36.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37.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의 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8. 단지 외각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인·허가과정에서 선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래미안 종암2차 분양계약서 설계관련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 4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및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 입주예정일 : 200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중도금납부 기준 공정시점 : 2008년 08월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2006. 12. 27 ~ 2009. 10. 30	84,581,600,000원	제01282006 - 101 - 00214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가목에 따라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보증대상 제외사항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 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홈오토,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부위,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포함)
토목, 건축	(주)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3,242,002,280원
전기, 통신, 소방	태험전기 주식회사	544,500,000원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7. 1. 24 ~ 2. 2	2007. 1. 24 ~ 2. 2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전화 1588 - 9999 (서비스코드 704)	전화 1369 (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및 시간	2007. 1. 24 ~ 2. 2 (10일간 07:00 ~ 23:00)	2007. 1. 24 ~ 2. 2 (10일간 07:00 ~ 23:00)
휴대폰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7. 1. 24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사업주체명 : 종암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주택건설지정업 지정번호 제48호)
- ■ 모델하우스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 - 2번지 래미안 갤러리
- ■ 분 양 안 내 : 02)765 - 3327, 1588 - 3588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02-765-3327

고객센터 1588-3588

www.raemian.co.kr

■ 견본주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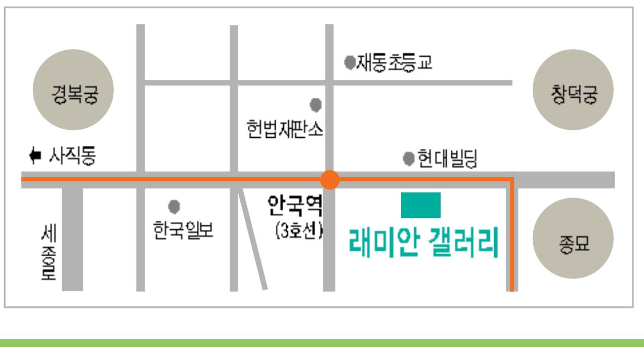

RAEMIAN Jongam

삼성물산 건설부문 SAMSUNG

래미안 종암2차 아파트 동호수표 및 분양가

(단위 : 천원)

17F	1705 276,900	1704 276,900			
16F	☒ 1605	☒ 1604	1603 276,900		
15F	☒ 1505	☒ 1504	1503 276,900		
14F	☒ 1405	☒ 1404	1403 276,900		
13F	☒ 1305	☒ 1304	☒ 1303	1302 261,900	
12F	☒ 1205	☒ 1204	☒ 1203	☒ 1202	
11F	☒ 1105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5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5	☒ 904	☒ 903	☒ 902	☒ 901
8F	805 276,900	804 276,900	803 276,900	802 261,900	801 268,500
7F	705 276,900	704 276,900	703 276,900	702 261,900	701 268,500
6F	605 271,300	604 271,300	603 271,300	602 256,700	601 263,200
5F	505 271,300	504 271,300	503 271,300	502 256,700	501 263,200
4F	405 271,300	404 271,300	403 271,300	402 256,700	401 263,200
3F	305 268,500	304 268,500	303 268,500	302 254,000	301 260,500
2F	205 259,700	204 259,700	203 259,700	202 245,700	201 251,900
1F	105 245,000	104 245,000	103 245,000	102 231,800	101 237,700
	25A	25A	25A	25B	25A
	남향				동향
	101동				

17F	1705 276,900	1704 276,900	1703 276,900		
16F	1605 279,400	1604 279,400	1603 279,400		
15F	☒ 1505	☒ 1504	☒ 1503	1502 261,900	
14F	☒ 1405	☒ 1404	☒ 1403	☒ 1402	
13F	☒ 1305	☒ 1304	☒ 1303	☒ 1302	
12F	☒ 1205	☒ 1204	☒ 1203	☒ 1202	1201 268,500
11F	☒ 1105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5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5	☒ 904	☒ 903	☒ 902	☒ 901
8F	805 276,900	804 276,900	803 276,900	802 261,900	801 268,500
7F	705 276,900	704 276,900	703 276,900	702 261,900	701 268,500
6F	605 271,300	604 271,300	603 271,300	602 256,700	601 263,200
5F	505 271,300	504 271,300	503 271,300	502 256,700	501 263,200
4F	405 271,300	404 271,300	403 271,300	402 256,700	401 263,200
3F	305 268,500	304 268,500	303 268,500	302 254,000	301 260,500
2F	205 259,700	204 259,700	203 259,700	202 245,700	201 251,900
1F	105 245,000	104 245,000	103 245,000	102 231,800	101 237,700
	25A	25A	25A	25B	25A
	남향				동향
	102동				

21F		2103 260,000	2102 260,000	
20F		2003 262,300	2002 262,300	
19F	1904 261,300	☒ 1903	☒ 1902	
18F	1804 263,700	☒ 1803	☒ 1802	1801 261,300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1104 263,700	1103 262,300	1102 262,300	☒ 1101
10F	1004 261,300	1003 260,000	1002 260,000	1001 261,300
9F	904 261,300	903 260,000	902 260,000	901 261,300
8F	804 261,300	803 260,000	802 260,000	801 261,300
7F	704 261,300	703 260,000	702 260,000	701 261,300
6F	604 256,100	603 254,800	602 254,800	601 256,100
5F	504 256,100	503 254,800	502 254,800	501 256,100
4F	404 256,100	403 254,800	402 254,800	401 256,100
3F	304 253,500	303 252,100	302 252,100	301 253,500
2F	204 245,100	203 243,800	202 243,800	201 245,100
1F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25D	25C	25C	25D
	남서향		남동향	
	103동			

21F	2104 261,300			2101 261,300
20F	2004 263,700			2001 263,700
19F	1904 263,700			1901 263,700
18F	1804 263,700	1803 260,000	1802 260,000	1801 263,700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1104 263,700	1103 262,300	1102 262,300	1101 263,700
10F	1004 261,300	1003 260,000	1002 260,000	1001 261,300
9F	904 261,300	903 260,000	902 260,000	901 261,300
8F	804 261,300	803 260,000	802 260,000	801 261,300
7F	704 261,300	703 260,000	702 260,000	701 261,300
6F	604 256,100	603 254,800	602 254,800	601 256,100
5F	504 256,100	503 254,800	502 254,800	501 256,100
4F	404 256,100	403 254,800	402 254,800	401 256,100
3F	304 253,500	303 252,100	302 252,100	301 253,500
2F	204 245,100	203 243,800	202 243,800	201 245,100
1F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25D	25C	25C	25D
	남서향		남동향	
	104동			

18F	☒ 1804	☒ 1803	1802 581,200	1801 581,200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4	☒ 903	☒ 902	☒ 901
8F	☒ 804	☒ 803	802 581,200	☒ 801
7F	☒ 704	☒ 703	702 581,200	701 581,200
6F	☒ 604	☒ 603	602 569,600	601 569,600
5F	☒ 504	☒ 503	502 569,600	501 569,600
4F	☒ 404	☒ 403	402 569,600	401 569,600
3F	☒ 304	☒ 303	302 563,900	301 563,900
2F	☒ 204	☒ 203	202 545,200	201 545,200
1F	104 373,900	103 373,900	102 514,400	101 514,400
	33A	33A	43	43
	남서향		남향	
	105동			

18F	☒ 1804	☒ 1803	1802 581,200	1801 581,200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4	☒ 903	☒ 902	☒ 901
8F	☒ 804	☒ 803	802 581,200	801 581,200
7F	☒ 704	☒ 703	702 581,200	701 581,200
6F	☒ 604	☒ 603	602 569,600	601 569,600
5F	☒ 504	☒ 503	502 569,600	501 569,600
4F	☒ 404	☒ 403	402 569,600	401 569,600
3F	☒ 304	☒ 303	302 563,900	301 563,900
2F	☒ 204	☒ 203	202 545,200	201 545,200
1F	☒ 104	103 373,900	102 514,400	101 514,400
	33A	33A	43	43
	남서향		남향	
	106동			

24F	☒ 2404	☒ 2403	☒ 2402	
23F	☒ 2304	☒ 2303	☒ 2302	☒ 2301
22F	☒ 2204	☒ 2203	☒ 2202	☒ 2201
21F	☒ 2104	☒ 2103	☒ 2102	☒ 2101
20F	☒ 2004	☒ 2003	☒ 2002	☒ 2001
19F	☒ 1904	☒ 1903	☒ 1902	☒ 1901
18F	☒ 1804	☒ 1803	☒ 1802	☒ 1801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4	☒ 903	☒ 902	☒ 901
8F	☒ 804	☒ 803	☒ 802	☒ 801
7F	☒ 704	☒ 703	☒ 702	☒ 701
6F	☒ 604	☒ 603	☒ 602	☒ 601
5F	☒ 504	☒ 503	☒ 502	☒ 501
4F	☒ 404	☒ 403	☒ 402	☒ 401
3F	☒ 304	☒ 303	☒ 302	☒ 301
2F	☒ 204	☒ 203	☒ 202	☒ 201
1F	필로티	필로티	102 353,500	☒ 101
	33C	33B	33B	33C
	남서향		남동향	
	107동			

23F	2302 268,500	2301 268,500
22F	☒ 2202	☒ 2201
21F	☒ 2102	☒ 2101
20F	☒ 2002	☒ 2001
19F	☒ 1902	☒ 1901
18F	☒ 1802	☒ 1801
17F	☒ 1702	☒ 1701
16F	☒ 1602	☒ 1601
15F	☒ 1502	☒ 1501
14F	☒ 1402	☒ 1401
13F	☒ 1302	☒ 1301
12F	☒ 1202	☒ 1201
11F	1102 271,000	☒ 1101
10F	1002 268,500	1001 268,500
9F	902 268,500	901 268,500
8F	802 268,500	801 268,500
7F	702 268,500	701 268,500
6F	602 263,200	601 263,200
5F	502 263,200	501 263,200
4F	402 263,200	401 263,200
3F	302 260,500	301 260,500
2F	202 251,900	201 251,900
1F	필로티	필로티
	25A	25A
	동향	
	108동	

22F	☒ 2204			☒ 2201
21F	☒ 2104			☒ 2101
20F	☒ 2004			☒ 2001
19F	☒ 1904		☒ 1902	☒ 1901
18F	☒ 1804	☒ 1803	☒ 1802	☒ 1801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4	☒ 903	☒ 902	☒ 901
8F	☒ 804	☒ 803	☒ 802	☒ 801
7F	☒ 704	☒ 703	☒ 702	☒ 701
6F	☒ 604	☒ 603	☒ 602	☒ 601
5F	☒ 504	☒ 503	☒ 502	☒ 501
4F	☒ 404	☒ 403	☒ 402	☒ 401
3F	☒ 304	☒ 303	☒ 302	☒ 301
2F	☒ 204	☒ 203	☒ 202	☒ 201
1F	필로티	필로티	102 353,500	101 353,500
	33C	33B	33B	33C
	남서향		남동향	
	109동			

24F	2402 581,200	2401 581,200
23F	☒ 2302	☒ 2301
22F	☒ 2202	☒ 2201
21F	☒ 2102	☒ 2101
20F	☒ 2002	☒ 2001
19F	☒ 1902	☒ 1901
18F	☒ 1802	☒ 1801
17F	☒ 1702	☒ 1701
16F	☒ 1602	☒ 1601
15F	☒ 1502	☒ 1501
14F	☒ 1402	☒ 1401
13F	☒ 1302	☒ 1301
12F	☒ 1202	☒ 1201
11F	1102 586,500	1101 586,500
10F	1002 581,200	1001 581,200
9F	902 581,200	901 581,200
8F	802 581,200	801 581,200
7F	702 581,200	701 581,200
6F	602 569,600	601 569,600
5F	502 569,600	501 569,600
4F	402 569,600	401 569,600
3F	302 563,900	301 563,900
2F	202 545,200	201 545,200
1F	102 514,400	101 514,400
	43	43
	남향	
	110동	

22F	2202 581,200	2201 581,200
21F	☒ 2102	☒ 2101
20F	☒ 2002	☒ 2001
19F	☒ 1902	☒ 1901
18F	☒ 1802	☒ 1801
17F	☒ 1702	☒ 1701
16F	☒ 1602	☒ 1601
15F	☒ 1502	☒ 1501
14F	☒ 1402	☒ 1401
13F	☒ 1302	☒ 1301
12F	☒ 1202	☒ 1201
11F	☒ 1102	☒ 1101
10F	1002 581,200	1001 581,200
9F	902 581,200	901 581,200
8F	802 581,200	801 581,200
7F	702 581,200	701 581,200
6F	602 569,600	601 569,600
5F	502 569,600	501 569,600
4F	402 569,600	401 569,600
3F	302 563,900	301 563,900
2F	202 545,200	201 545,200
1F	102 514,400	101 514,400
	43	43
	남향	
	111동	

23F			☒ 2302	☒ 2301
22F			☒ 2202	☒ 2201
21F			☒ 2102	☒ 2101
20F	☒ 2004	☒ 2003	☒ 2002	☒ 2001
19F	☒ 1904	☒ 1903	☒ 1902	☒ 1901
18F	☒ 1804	☒ 1803	☒ 1802	☒ 1801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4	☒ 903	☒ 902	☒ 901
8F	☒ 804	☒ 803	☒ 802	☒ 801
7F	☒ 704	☒ 703	☒ 702	☒ 701
6F	☒ 604	☒ 603	☒ 602	☒ 601
5F	☒ 504	☒ 503	☒ 502	☒ 501
4F	☒ 404	☒ 403	☒ 402	☒ 401
3F	☒ 304	☒ 303	☒ 302	☒ 301
2F	☒ 204	☒ 203	☒ 202	☒ 201
1F	104 353,500	☒ 103	102 353,500	필로티
	33C	33B	33B	33C
	남서향		남동향	
	112동			

22F	☒ 2202	☒ 2201
21F	☒ 2102	☒ 2101
20F	☒ 2002	☒ 2001
19F	☒ 1902	☒ 1901
18F	☒ 1802	☒ 1801
17F	☒ 1702	☒ 1701
16F	☒ 1602	☒ 1601
15F	☒ 1502	☒ 1501
14F	☒ 1402	☒ 1401
13F	☒ 1302	☒ 1301
12F	☒ 1202	☒ 1201
11F	☒ 1102	☒ 1101
10F	☒ 1002	☒ 1001
9F	☒ 902	☒ 901
8F	☒ 802	☒ 801
7F	☒ 702	☒ 701
6F	☒ 602	☒ 601
5F	☒ 502	☒ 501
4F	☒ 402	☒ 401
3F	☒ 302	☒ 301
2F	☒ 202	☒ 201
1F	102 362,700	101 362,700
	33A	33A
	동향	
	113동	

20F			☒ 2002	☒ 2001
19F			☒ 1902	☒ 1901
18F			☒ 1802	☒ 1801
17F	☒ 1704	☒ 1703	☒ 1702	☒ 1701
16F	☒ 1604	☒ 1603	☒ 1602	☒ 1601
15F	☒ 1504	☒ 1503	☒ 1502	☒ 1501
14F	☒ 1404	☒ 1403	☒ 1402	☒ 1401
13F	☒ 1304	☒ 1303	☒ 1302	☒ 1301
12F	☒ 1204	☒ 1203	☒ 1202	☒ 1201
11F	☒ 1104	☒ 1103	☒ 1102	☒ 1101
10F	☒ 1004	☒ 1003	☒ 1002	☒ 1001
9F	☒ 904	☒ 903	☒ 902	☒ 901
8F	☒ 804	☒ 803	☒ 802	☒ 801
7F	☒ 704	☒ 703	☒ 702	☒ 701
6F	☒ 604	☒ 603	☒ 602	☒ 601
5F	☒ 504	☒ 503	☒ 502	☒ 501
4F	☒ 404	☒ 403	☒ 402	☒ 401
3F	☒ 304	☒ 303	☒ 302	☒ 301
2F	☒ 204	☒ 203	☒ 202	☒ 201
1F	104 353,500	103 353,500	102 353,500	필로티
	33C	33B	33B	33C
	남서향		남동향	
	114동			

84.03㎡ (25평A형)	🟦
84.20㎡ (25평B형)	🟦
84.88㎡ (25평C형)	🟥
84.01㎡ (25평D형)	🟪
110.74㎡ (33평A형)	🟧
111.11㎡ (33평B형)	🟩
109.95㎡ (33평C형)	🟩
143.79㎡ (43평형)	🟫
조합원	☒

| 단지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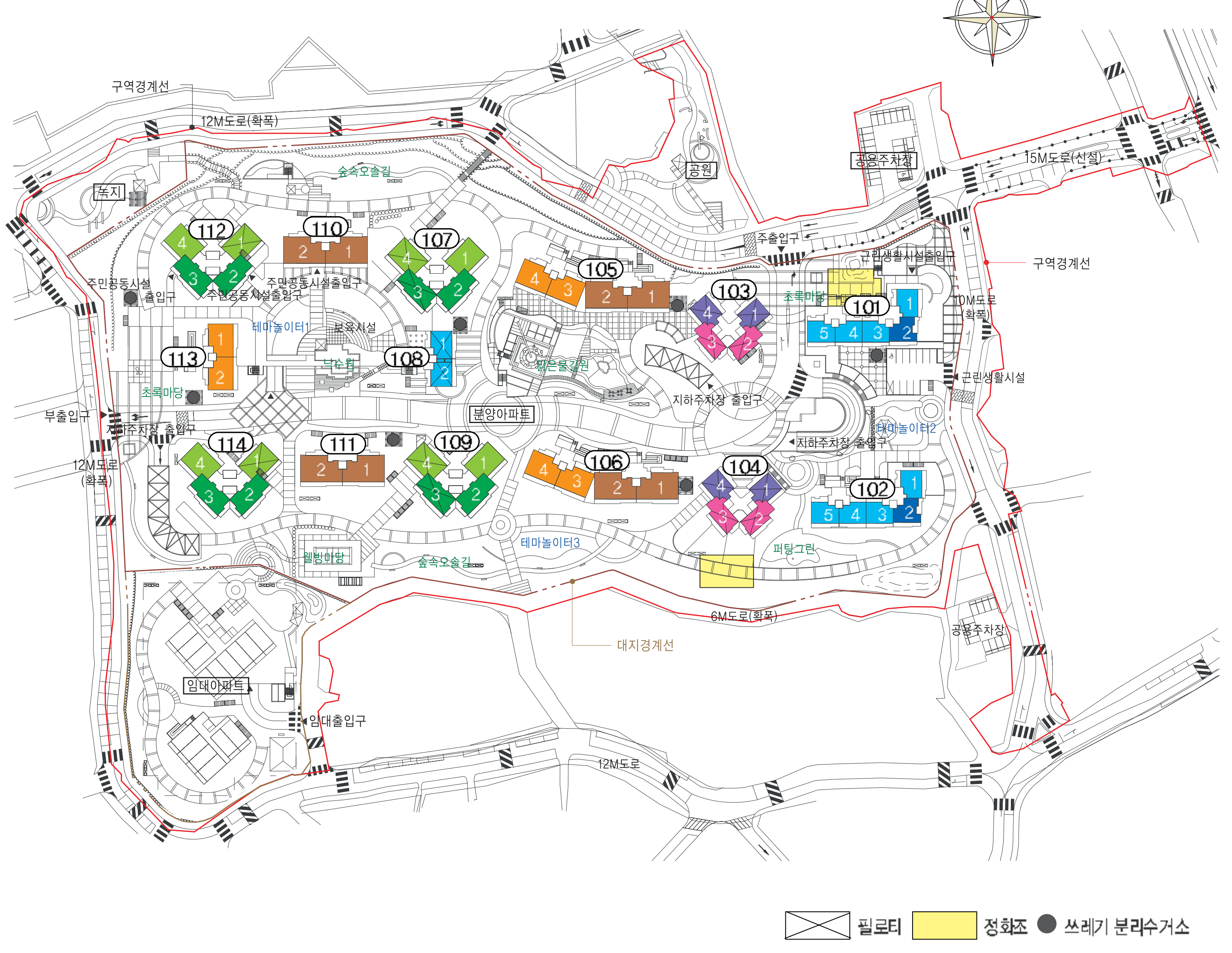

84.03㎡ 25평 A형

168세대 중 일반분양 97세대

전용면적	59.97㎡
주거공용면적	24.06㎡
분양면적	84.03㎡
기타공유면적	2.77㎡
지하주차장	32.56㎡
계약면적	119.36㎡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조망과 일조권을 고려한 전면 3Bay 설계
- 주방과 거실의 자연통풍을 고려한 일자형 설계
- 침실1(안방), 욕실2(전용욕실)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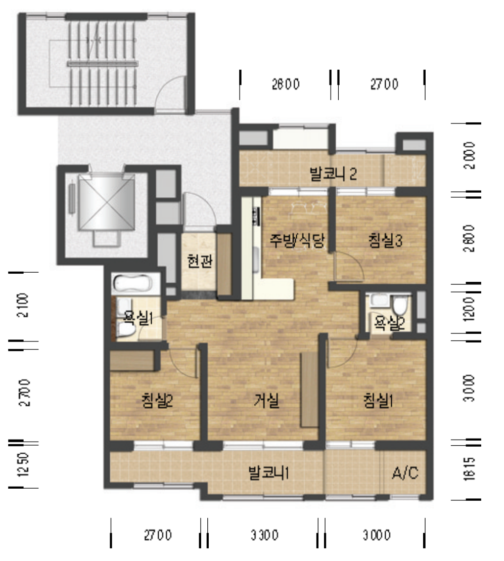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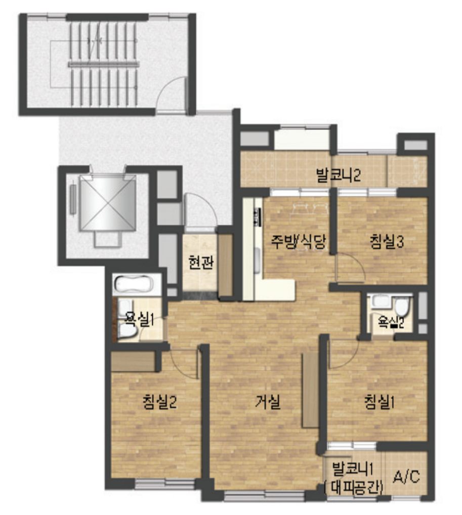

84.20㎡ 25평 B형

28세대 중 일반분양 18세대

전용면적	59.92㎡
주거공용면적	24.28㎡
분양면적	84.20㎡
기타공유면적	2.77㎡
지하주차장	32.53㎡
계약면적	119.50㎡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조망과 일조권을 고려한 전면 3Bay 설계
- 더 넓은 공간감을 위한 거실과 주방의 일체형 공간 설계
- 침실1(안방), 욕실2(전용욕실)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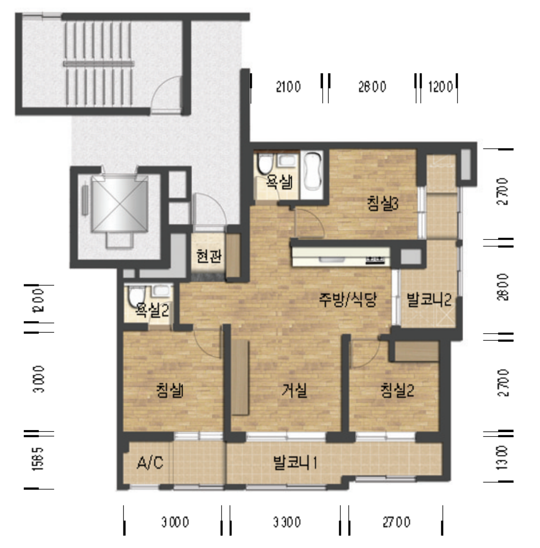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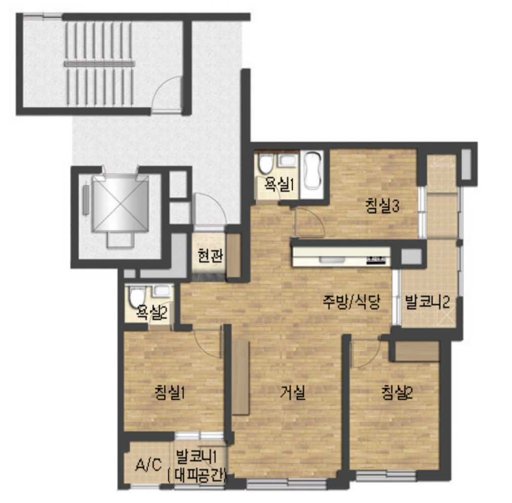

84.88㎡ 25평 C형

74세대 중 일반분양 46세대

전용면적	59.92㎡
주거공용면적	24.96㎡
분양면적	84.88㎡
기타공유면적	2.77㎡
지하주차장	32.53㎡
계약면적	120.18㎡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조망과 일조권을 고려한 타워형 4Bay 설계
- 주방의 독립성 확보
- 침실1(안방), 욕실2(전용욕실)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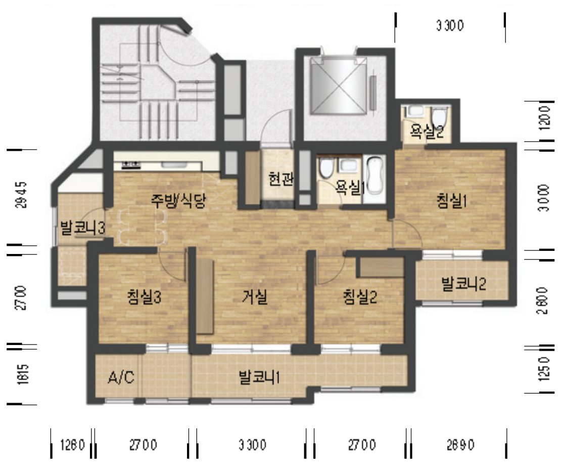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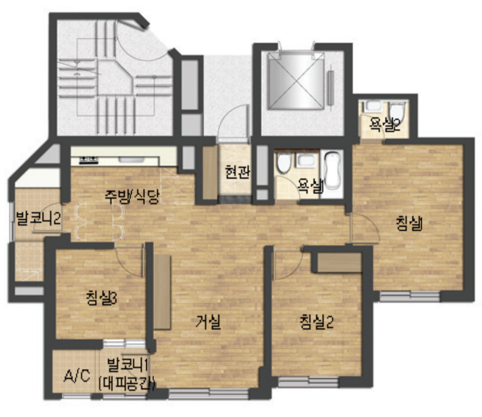

84.01㎡ 25평 D형

75세대 중 일반분양 50세대

전용면적	59.97㎡
주거공용면적	24.04㎡
분양면적	84.01㎡
기타공유면적	2.77㎡
지하주차장	32.56㎡
계약면적	119.34㎡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주방과 거실의 자연통풍을 고려한 일자형 설계
- 침실1(안방), 욕실2(전용욕실)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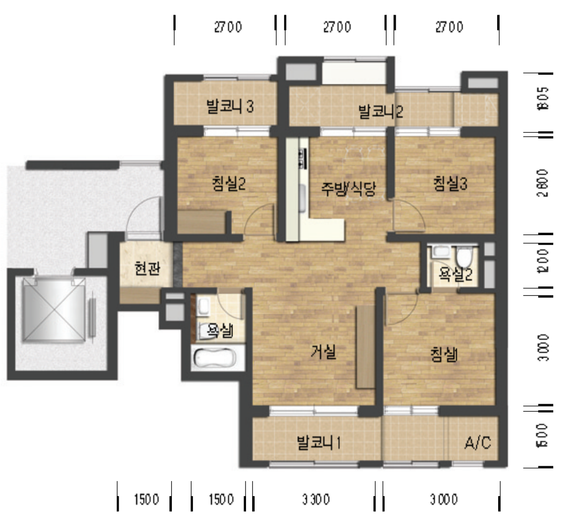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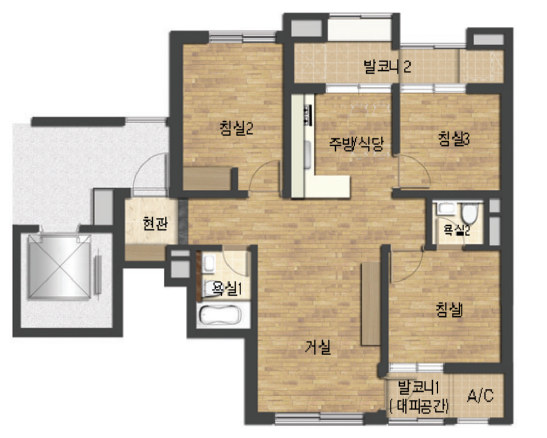

110.74㎡ 33평 A형

116세대 중 일반분양 5세대

전용면적	84.92㎡
주거공용면적	25.82㎡
분양면적	110.74㎡
기타공유면적	3.92㎡
지하주차장	46.11㎡
계약면적	160.77㎡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주방과 거실의 자연통풍을 고려한 일자형 설계
- 드레스룸 전용욕실 일체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 설계
- 자연환기가 가능한 욕실설계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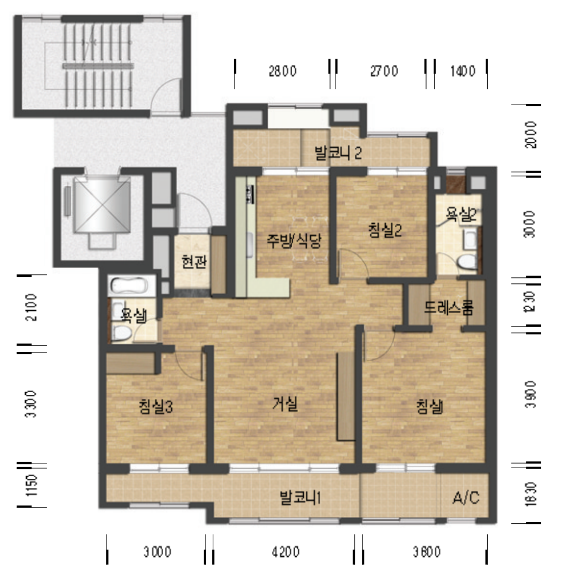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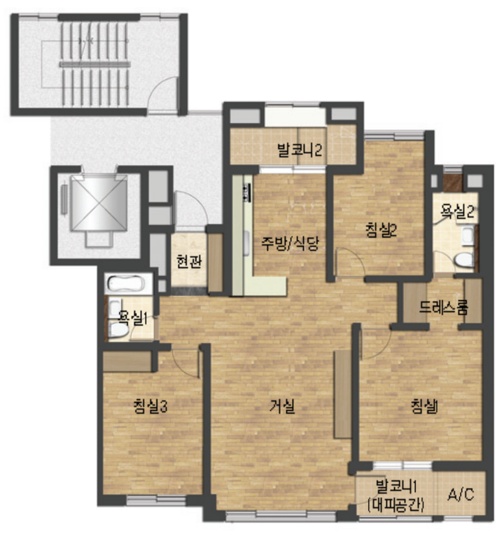

111.11㎡ 33평 B형

163세대 중 일반분양 5세대

전용면적	84.99㎡
주거공용면적	26.12㎡
분양면적	111.11㎡
기타공유면적	3.92㎡
지하주차장	46.15㎡
계약면적	161.18㎡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조망과 일조권을 고려한 타워형 4Bay 설계
- 주방의 독립성 확보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드레스룸 전용욕실 분리로 쾌적성 확보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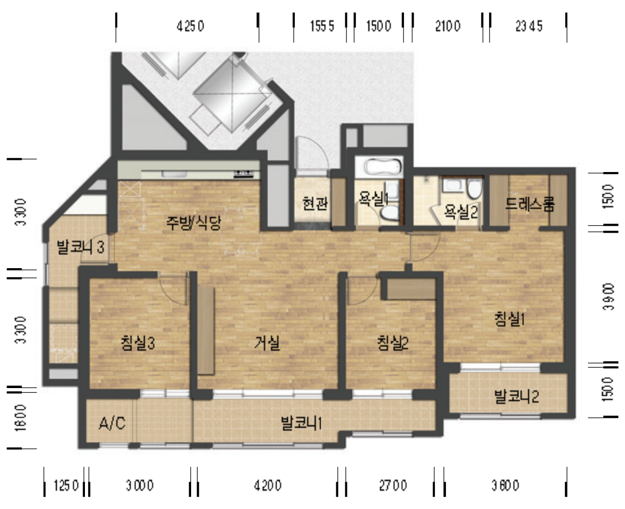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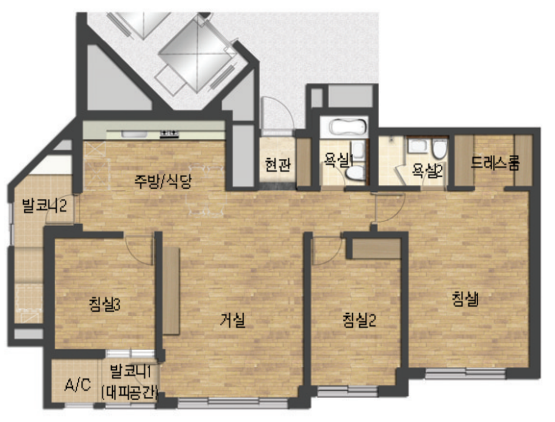

109.95㎡ 33평 C형

167세대 중 일반분양 3세대

전용면적	84.98㎡
주거공용면적	24.97㎡
분양면적	109.95㎡
기타공유면적	3.92㎡
지하주차장	46.14㎡
계약면적	160.01㎡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주방과 거실의 자연통풍을 고려한 일자형 설계
- 드레스룸 전용욕실 일체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자연환기가 가능한 욕실설계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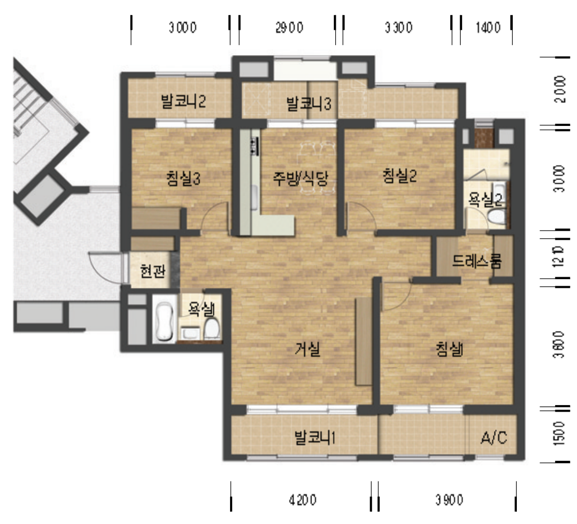

| 발코니 확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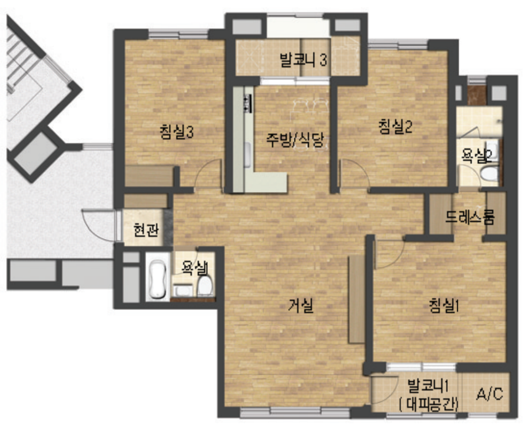

143.79㎡ 43평형

164세대 중 일반분양 81세대

전용면적	114.99㎡
주거공용면적	28.80㎡
분양면적	143.79㎡
기타공유면적	5.31㎡
지하주차장	62.44㎡
계약면적	211.54㎡

세대 내 평면 특장점

- 조망과 일조권을 고려한 정남향 4Bay 설계
- 주방과 거실의 자연통풍을 고려한 일자형설계
- 드레스룸 전용욕실 일체형 설계
- 거실 및 침실 확장성 확보
-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방형발코니 설계
- 자연환기가 가능한 욕실설계

| 기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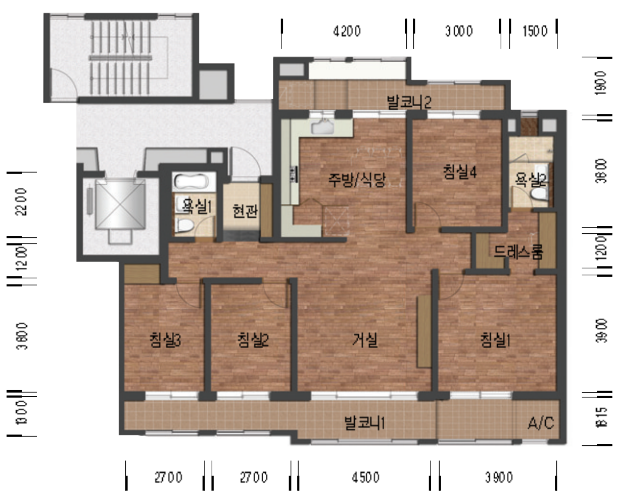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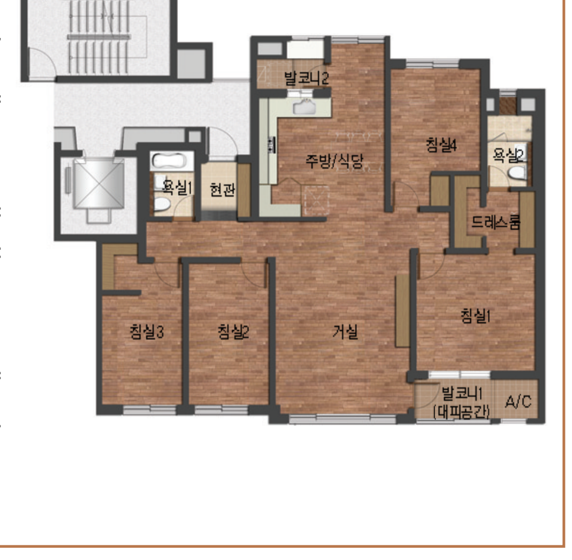| 발코니 확장형 |